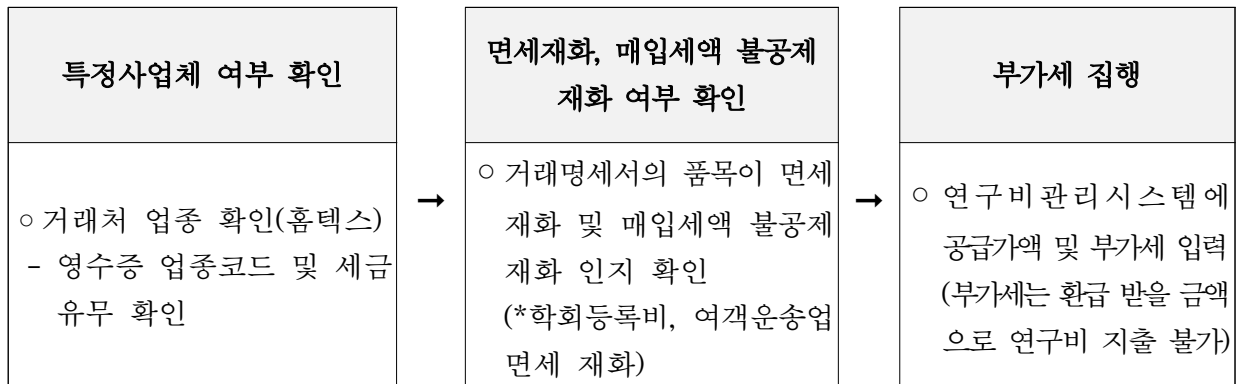


1. 업무개요

- 목적 : 회계관련 법령 및 집행방법 이해
- 시기 : 상시
- 관련법령 또는 근거
 - 부가가치세법,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- 관련부서 : 연구지원팀

2. 업무흐름도

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(카드전표) 집행



3. 주요내용

[연구과제의 부가가치세]

-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 및 국가R&D 위탁과제는 부가가치세부과 대상임
-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협약서 내 결과물 귀속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결과물의 소유권이 타 기관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연구과제 대상
(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, 방법,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제외 *부가가치세 면세 연구용역 확인서 제출)

4. 업무처리 유의사항

-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음 (예시) 기자재 및 재료비 구입, 회의비, 식대, 연구환경유지비, 사무용품 구입 등
-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특정 물품이나 사업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연구비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‘0원’ 으로 청구해야 함 (예시) 면세사업자(비영리기관 등), 간이과세자, 휴·폐업 사업자

〈표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

| 구분 | 면세대상 |
|------------|--|
| 연구 및 기술 용역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(2013. 6. 7. 개정)</p> <p>15. 저술가·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(人的)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(2013. 6. 7. 개정)</p> |
|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【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</p> <p>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(人的) 용역은 독립된 사업(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. (2013. 6. 28. 개정)</p> <p>2. 개인,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·재단,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(2013. 6. 28. 개정)</p> <p>나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(2013. 6. 28. 개정)</p> |
|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【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】 (2013. 06. 28. 기획재정부령 제355호)</p> <p>영 제42조 제2호 나목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”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·방법·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. (2013. 6. 28. 개정)</p> |
| 기타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</p> <p>① 항의 6.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</p> <p>7. 여객운송 용역. 다만, 항공기, 고속버스, 전세버스, 택시, 특수자동차, 특종선박(特種船舶)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</p> <p>8. 도서(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), 신문, 잡지, 관보(官報),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광고는 제외한다.</p> |